



의안번호	제00호
회의 연월일	2024. 5. 20. (제538회 정기회의)

심의 의결 사항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
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(대통령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수사국)
제출연월일	2024. 5. 7.

경제범죄수사과장,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 이유

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’를 설치하도록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68호, 2024. 2. 27 공포, 8. 28. 시행)됨에 따라, 센터의 구성·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센터의 그 밖의 업무를 규정(안 제2조의6 신설)

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국내·외 자료의 수집·분석 등 법 제2조의7 제2항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센터의 업무와 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전파하고,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범위를 규정함

나. 센터의 인력 파견 요청 근거 마련(안 제2조의7 신설)

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과 파견 인원 및 기간을 협의하도록 하고,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을 하도록 함

다. 센터의 구성·운영 방법 및 센터장 등의 임무 규정(안 제2조의8 신설)

센터는 센터장 1명, 금융·통신 자문관 각 1명 및 직원으로 센터를 구성·운영하고, 센터장 등의 임무를 규정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
금융감독원,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
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6에서 제2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6(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 등)

①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“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법제2조의7제2항제7호의 업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국내·외 자료의 수집, 통계 작성 및 발생현황 분석·공표

2.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·경보 발령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

3. 법 제2조의7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② 법 제2조의7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“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“관계 행정기관 등”이라 한다)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“관계 행정기관”이란 국무조정실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
2. “관련 기관·법인·단체”란 한국인터넷진흥원, 금융감독원,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,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③ 법 제2조의7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2조의7(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)

①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파견 인원 및 기간에 대해서 관계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·파견할 수 있으며,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·전보·교육·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경찰청장은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조의8(센터의 구성 및 운영)

① 센터에 센터장, 금융자문관과 통신자문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센터장은 법 제2조의7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,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, 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

⑥ 금융자문관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)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하고, 통신자문관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)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.

⑦ 센터의 직원은 경찰청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.

⑧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

급한다.

⑨ 경찰청장은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6(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 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 등)</u> ①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“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 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법제2조의7제2항제7호의 업 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 련 국내·외 자료의 수집, 통계 작성 및 발생현황 분석·공표 2.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 보·경보 발령을 위한 관계 행정 기관 등과의 협의 3. 법 제2조의7제2항 각 호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② 법 제2조의7제2항제7호 및 같 은 조 제3항의 “관계 행정기관 과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(이하 “관계 행정기관 등”이라 한다)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“관계 행정기관”이란 국무조

<신 설>

정실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
2. “관련 기관·법인·단체”란 한국인터넷진흥원, 금융감독원,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,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③ 법 제2조의7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2조의7(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)

①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파견 인원 및 기간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공

<신 설>

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·파견할 수 있으며,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·전보·교육·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경찰청장은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조의8(센터의 구성 및 운영)

① 센터에 센터장, 금융자문관과 통신자문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

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센터장은 법 제2조의7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,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, 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.

⑥ 금융자문관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)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하고, 통신자문관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)와 관련된 업무

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.

⑦ 센터의 직원은 경찰청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.

⑧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

⑨ 경찰청장은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제범죄수사과	
연 락 처	02-3150-3442